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134
----------	------

제출년월일 : 2011. 6. 10.
제출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녹색교통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함

주요내용

- 가.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결과 평가,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의(안 제4조)
- 나.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관계 전문가의 청취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정조례안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 교통 수단)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입법예고 : 2011. 5. 9. ~ 5. 30. (21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발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원 3명
 3. 교통약자·보행환경·자전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의견수렴 및 홍보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연구 및 추진

5. 시민자전거 운용 개선방안 연구 및 평가
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평가·위탁
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한다.

②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을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③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8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녹색교통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색교통과장 박 미 라
	담당·팀장 직위·성명	녹색교통담당 최 시 영
	담당자 성명·전화	정기영 (행정 2493)